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0. 12. 15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20년 11월 12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0년 11월 19일

라. 상정일자: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

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(2020. 12. 7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기획재정국장 정언택)

가. 제안이유

- 현행 구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20.12.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 3년을 연장하여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한 구세 감면 규정을 계속 유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감면 적용시한 개정(안 부칙 제3조)

- '2020년 12월 31일'을 '2023년 12월 31일'로 개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○ 본 조례안은 구세 감면 규정 적용 시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그 효력이 실효됨에 따라 종전 조례의 감면 사항 등을 유지하고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자 제안되었음.

○ 검토결과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에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 경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부합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81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0. 11. .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현행 구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20.12.31. 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 3년을 연장하여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한 구세 감면 규정을 계속 유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조례 제120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의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부패영향평가: 원안 동의

2) 인권영향평가: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대상

4) 행정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0. 10. 15. ~ 11. 4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120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
제3조 중 “2020년 12월 31일”을 “2023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조례 제120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</p> <p>제3조(적용시한) 이 조례는 각 조문에 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<u>2020년 12월 31일까지</u> 그 효력을 가진다.</p>	<p>조례 제120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</p> <p>제3조(적용시한) ----- ----- -----<u>2023년 12월 31일</u>----- -----.</p>